

## 11.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친환경기술과 (지방농촌지도관 이수영·지방농촌지도사 이준배 031-229-5861,3 )입니다.

농업인의 영농경험과 영농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 및 현장 실용화기술을 농업인 주도하에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통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

### (1) 사업 일반현황

#### □ 추진방향

- 농·축산물 생산주체인 농업인 주도로 현장에서 실용화 가능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현장 애로기술과 문제점 해소를 통한 농·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기술개발
-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장·연구소 등과 대학 등에서 개발한 기술의 영농현장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 적응시험 등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

#### □ 근거법령

- 농촌진흥법 제5조(공동연구개발) 제①, ②항, 제8조(지원시책등의 건의) 제①항 및 제16조(농업산·학협동사업의 지원)

#### □ 지원대상 분야

-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품목별 애로사항 해소 기술
  - 식량작물, 원예작물, 축산, 농촌자원 및 농식품 가공, 새로운 아이디어 실증 적용 등
- 중앙단위 시험·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
-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완기술 개발 과제
- 농업용 기자재 개발, 특수농법 등 실용기술 개발과제 등

#### □ 주요사업내용

- 사업비 : 과제당 최대 30백만원 이내
- 연구기간 : 1~2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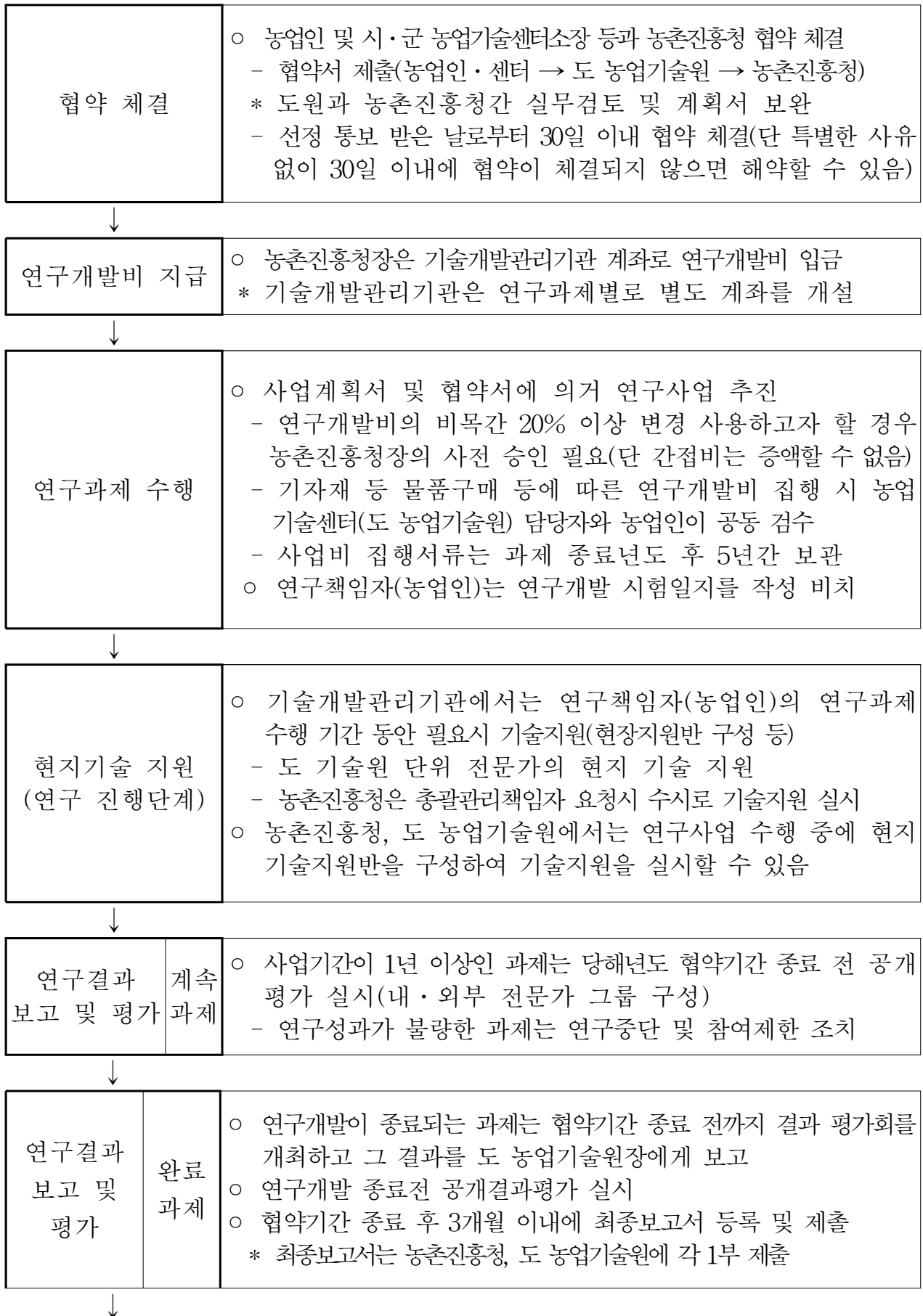
○ 참여자격 :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(도 농업기술원)와 협동으로 새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농업인

※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지역은 농촌지도사업 주관 부서와 협동으로 추진

(2) 사업 추진 요령

□ 사업추진절차

사업계획서 작성 (연중 수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업인이 직접 작성</li> <li>- 농촌지도기관의 전문가 협조(연구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등)</li> </ul>
과제 신청·접수 (연중 수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·접수</li> <li>- 제출서류 및 계획서 검토·보완</li> </ul>
사업계획 확정 및 공고 (사업전년도 1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촌진흥청(사업안 확정, 지도기관 시행), 도원, 시·군 농업기술센터(홈페이지 등에 공고)</li> <li>* 농촌진흥청은 30일 이상 과제 신청 공고(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)</li> </ul>
신청 과제 평가 및 심사 (1차, 도농업기술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·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1차 평가 실시</li> <li>- 유사·중복과제는 제외</li> <li>- 평가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(평가위원 1명이라도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)</li> </ul>
신청 과제 평가 및 심사 (2차, 농촌진흥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촌진흥청에서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1차 평가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2차 평가 실시(공개평가)</li> <li>○ 농촌진흥청은 평가 및 심의 완료 후 과제 확정</li> </ul>
과제의 확정·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촌진흥청은 선정된 과제를 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</li> </ul>



연구개발비 정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</li> <li>- 농촌진흥청에서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부정적 집행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(단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 부여)</li> <li>* 농업기술센터(도 농업기술원)에서는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하여 집행</li> </ul>
----------	---



연구성과의 활용·보급 (연중 계속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종보고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게재</li> <li>○ 연구성과 홍보 및 현장적용(농업인, 지도기관 등)</li> <li>○ 시·군 농업기술센터(도 농업기술원)에서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연구성과활용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</li> <li>○ 현장 파급효과, 실용성이 높은 우수과제는 시범사업화 적극 지원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□ 기 타

- 2011년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운영계획에 의거 농업인기술개발사업 추진